

## 기부금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 앞쪽 )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인적사항 | ① 근무지 또는<br>사업장 상호    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
|        | ③ 성명                   | ④ 주민등록번호  |
|        | ⑤ 주소<br>(전화번호 : )      |           |
|        | ⑥ 사업장 소재지<br>(전화번호 : ) |           |

##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

[illegible]

###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

[illegible]

#### ④ 기부금 조정 명세

[illegible]

## 작성방법

※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·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. “㉠ 코드”란: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가. 특례기부금(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): 코드번호 "10"

나. 정치자금기부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): 코드번호 "20"

다. 고향사랑 기부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에 따른 기부금)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: 코드번호 "43"

- 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: 코드번호 "44"

라. 일반기부금[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(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,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)]: 코드번호 "40"

마. 일반기부금(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): 코드번호 "41"

바. 우리사주조합기부금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): 코드번호 "42"

사.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(미지급분 기부금 포함): "공제제외 기타", 코드번호 "50"

2. “㉡ 기부내용”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"금전"으로,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"현물"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.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.

3. “㉢ 상호(법인명)”란: 상호·법인명·단체명·성명을 적습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).

4. “㉣ 사업자등록번호 등”란: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·고유번호를 적습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). 다만,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·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5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“㉤ 해당 연도 기부 명세”란의 최상단에 적고, “㉢ 상호(법인명)”란과 “㉣ 사업자등록번호 등”란은 적지 않으며, “㉤ 기부 명세 합계”란에는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(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)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.

6. “㉥ 기부자”란: 관계코드(1. 거주자, 2. 배우자, 3. 직계비속, 4. 직계존속, 5. 형제자매, 6. 그 외),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.

7. “㉦ 공제대상기부금액”란: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(코드번호 "10", "20", "43", "40" ~ "42")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8. “㉧ 기부장려금 신청금액”란: 코드번호 "10", "41", "42"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

9. “㉨ 기타”란: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·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.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.

10. “㉩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”란: “㉤ 해당 연도 기부 명세”란의 “㉦ 공제대상 기부금액”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,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56호서식)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.

11. “㉪ 기부금 조정 명세”란 작성 방법

가.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“㉩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”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(소멸금액)을 계산합니다.

나.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.

다.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, 기부연도, ㉥ 기부금액, ㉦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, ㉦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라.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(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).

마.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특례기부금, 우리사주조합기부금,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,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.

바.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.

사.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.

아.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